#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51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병기・이개호・장종태

박지원 · 강준현 · 강유정

허 영·임광현·서삼석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 2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을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종자신원 확인 및 비상물품 전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생 략)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 종자 신원 확인 및 비상물품
	전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원센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u>운영</u>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u>파견</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
<u>\ \ \ \ \ \ \ \ \ \ \ \ \ \ \ \ \ \ \ </u>	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 구를 위하여 매년 재난으로 인 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